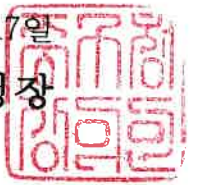


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모집 공고

서울 중구어린이집에 우수한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하고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, 희망업체는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대상업체 :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자 하는 신뢰있는 업체

2. 등록일시 및 장소

가. 공고기간 : 2022. 11. 17.(목) ~ 11. 25.(금)

나. 공고(게시)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, 서울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

다. 등록(접수)기간: 2022. 11. 21.(월) ~ 11. 25.(금) 16:00까지

※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.

라. 등록(접수)장소: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구청 1층 사무실
(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1층)

마. 참가서류 제출방법: 방문접수

3. 제출서류

가.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[붙임1]

나. 납품업체 소개서 [붙임2]

다. 친환경 농축수산물 주요 납품내역 [붙임3]

라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[붙임4]

마. 확인 서류 [붙임5. 확인 서류 목록 참고]

바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사. 법인 등기부등본 (개인은 주민등록등본)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

우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당연 취소됨

※ 급식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서를 첫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8부 제출(양면인쇄,쪽수표시,목차작성,견출지 부착)

4. 참가자격

아래 식품군별 조건을 충족시키는 식재료를 모두 납품 가능하고 그외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

가. 식품군별 참가자격

식품군	참 가 자 격
공 통	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- 종합보험에 가입된 식품 운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,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- 특별한 제외규정이 없는 한 "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" 신고를 필한 업체 - 식품군별 업체 자체 식품제조업, 식품소분업 신고를 필한 업체 우대
곡 류	- 곡물류·잡곡 도·소매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- 다음의 시설·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■ 차량(냉장): 1톤 이상 차량(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) 1대 이상 -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함 - 콩: 유전자변형되지 않은 콩을 원료로 한 콩가공품(두부,된장등)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함
농산물류	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, 시행규칙 제36조,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득한 업체 -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것을 납품해야 함 -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(GAP)식품 납품,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식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- 농산물 표준규격이 '상'등급 이상인 농산물,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'상'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- 전처리 농산물(수확 후 세척, 박피 절단 등의 가공처리가 된 것)의 경우 제조연월일, 업소명,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(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),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되어야 함
축산물류 (가금류)	-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-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작업장(적용업소)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체 -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- 영업소·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-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과 위해요소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을 납품하여야 함 - 쇠고기: 「축산법」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여야 함

	- 돼지고기: 「축산법」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의 것이어야 함 - 닭고기: 「축산법」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의 것이어야 함 - 계란: 「축산법」 제 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의 것이어야 함
공산품류	- 식품 소분·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※ 식품가공처리공장을 별도로 갖춘 사업장(대리점 등)에서는 본사 또는 공장(식품가공처리장)이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HACCP작업장 등의 인증(지정)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, 직접 대리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업체라야 함 - 공급하는 각각의 식품별로 영업제조허가증·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, 사업자등록사본, 성분분석표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- 다음의 시설·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■ 보관창고: 66㎡ 이상 ■ 냉창고: 10㎡ 이상 ■ 냉동고: 15㎡ 이상 ■ 차량(냉동·냉장차): 1톤, 1대 이상(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) - 원료의 가공 유통과정 중 산도조절제, 합성보존료, MSG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,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-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을 적용한 업소에서 생산, 제조, 가공된 식품을 납품해야 함
수산물	- 식품제조·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- 영업소·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신고(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식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포함)를 필한 업체 - 수산물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,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우대 - 다음의 시설·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■ 작업장: 66㎡ 이상 ■ 냉동고: 10㎡ 이상 ■ 냉창고: 10㎡ 이상 ■ 차량(냉동·냉장차): 톤, 1대 이상(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) -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한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 - 납품 시 원산지표시, 수입신고필증, 원양어획물반입신고서, 수산물 수매 확인서 등 제출이 가능한 업체 -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(원양산포함)과 같은 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, 또는 상품가치가 '상'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하여야 함 - 전처리 수산물(세척, 선별,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처리가 된 것)의 경우, 제조연월일, 업소명,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(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),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되어야 하며,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을 적용한 업소에서 생산, 제조, 가공된 식품을 납품해야 함 - 주기적(연2회이상)으로 중금속, 방사능 등의 유해성 검사확인을 필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. 유해성 검사 확인 결과(검사 확인 후 안전성이 낮은 납품목록 제외 등)를 홈페이지, 안내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하며,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
김치류	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, 시행규칙 제36조, 제42조 제5항 의거 식품제조·가공업(김치류) 신고를 득한 업체 - 비닐 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체·유통기한·성분분석 등을 표시 -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을 적용한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함(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함)

기 타	※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식자재 납품 최저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2(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)에 따름 ※ 납품하는 식재료별 '보관 및 조리 시 유의사항'을 제공할 것
-----	--

나. 그 외 참가자격

-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방사능 등 유해물질 측정가능 업체
- 입찰물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/물류창고/냉장/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
- 육류(소, 돼지)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-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 공개가 가능한 업체
- 식재료 입고 시 입고날짜 및 유통기한 표시등의 라벨부착이 가능한 업체
- 대금결제는 반드시 카드나 계좌이체가 가능한 업체(현금결제 불가 및 세금계산서 발급)
- 소규모 시설(영·유아 20인 미만 보육시설)에도 배달 가능한 업체
- 어린이집에 오전 7시 ~ 9시 사이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
- 입고방법: 냉장·냉동식품은 반드시 냉장·냉동 칸이 분리된 탑차를 가동하여 입고

다. 참여제한: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선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-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
-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
-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
5. 업체선정

가. 일 정: 모집공고→희망업체 접수→1차 심사(서류심사)
→2차 심사(1차 심사 통과 업체의 제안 설명)→ 업체선정

나. 방 법

- 1차 심사 : 2022. 12. 13.(화) 예정, 합격업체 개별 통보(유선)
 - 2차 심사 : 2022. 12. 20.(화) 예정,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 제안서 발표
- ※ 서류심사 통과업체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운영계획 등에 대한 PPT 파일을 준비하여 소견을 발표(15분)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(5분)

하여야 함.

다. 통 보: 2022. 12월 중 서울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
6. 계약기간 : 2023. 1. 1. ~ 2024. 12. 31.

※ 계약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급업체간 협약 체결 후 어린이집과 개별계약 체결

7. 계약해지 :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약 해지 할 수 있음

-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조사와 비교하여 3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
-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,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도록 하고, 반품 횟수가 3회이거나,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 시
- 급식 납품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
-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(☎070-4465-4322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